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업무 지침

제정 2017. 12. 28.

개정 2020. 03. 11.

개정 2021. 04. 30.

개정 2022. 01. 27.

개정 2022. 03. 31.

전부개정 2023. 04. 0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2항,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4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의6부터 제15조의12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 및 인증평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

- 1.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하여 상용(商用)으로 타인에게 정보통신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말 하다.
- 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이하 "보안인증"이라 한다)"이란 법 제23조의2에 따른 보 안인증을 말하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 관련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보안인증기준에 적 합함을 한국인터넷진홍원 또는 인증기관이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 3. "인증기관"이란 보안인증 업무를 수행하며 인증평가 결과의 심의, 보안인증서의 발급·관리, 보안인증의 사후관리 등 보안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본 지침에서는 한 국인터넷진흥원이 인증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 4. "평가기관"이란 인증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가. 법 제23조의2제6항에 따라 인증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하 "지정평 가기관"이라 한다)
 - 나. 법 제23조의2제5항제1호에 따라 인증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 관
- 5. "인증신청인"이란 시행령 제15조의6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서 및 보안인증에 필요한 서류를 한국인터넷진홍원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보안인증을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 6. "인증취득인"이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인증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 7. "인증위원회"란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이 인증평가 결과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기구를 말하다.
- 8. "인증위원"이란 인증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을 말한다.
- 9. "보궐위원"이란 인증위원회의 결원이 생겼을 경우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위촉하는 인증위원을 말한다.
- 10. "보안인증평가원"이란 고시 제16조제2항에 따라 인증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 11. "보안인증기준"이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서 고시 별표1부터 별표4까지를 말한다.
- 12. "인증평가"란 보안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 13. "부적합"이란 인증신청인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보안인증기준에 규정된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항을 말한다.
- 14. "취약점"이란 취약점 점검 및 침투테스트를 통해 발견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한다.
- 15. "최초평가"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해 최초로 보안인증을 신청하여 인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16. "사후평가"란 보안인증을 받고난 후 매년 사후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인증평가를 말한다.
- 17. "갱신평가"란 유효기간 만료 전 유효기간 갱신을 위해 실시하는 인증평가를 말한다.
- 18. "인증기준 해설서"란 평가기관이 인증평가 과정에서 적용해야 하는 인증기준 항목별 세부적인 요구사항 및 확인사항을 서술한 문서를 말한다.

제2장 보안인증 신청 및 수수료 납부 등

제3조(보안인증 신청) ① 인증신청인은 보안인증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한국 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 신청서
- 2. 고시 별지 제2호서식의 취약점 점검 및 침투테스트 동의서
- 3. 고시 별지 제3호서식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 명세서(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운 영 명세서 포함)
 - 4. 사업자등록증
 - 5. 시행령 제15조의9제2항에 따른 인증수수료 지원 대상인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6. 별지 제14호 서식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 기업 현황
 - ② 인증신청인은 제출물에 대한 정당한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제출물이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인증신청인에게 있음을 인지하여 야 한다.

- 제4조(신청서류의 접수) ① 한국인터넷진홍원은 인증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기재사항이 미비하거나 첨부서류가 누락되었을 경우 인증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인증신청인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수정·보완 또는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안인증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제5조(인증평가 요청)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인증신청인의 대상, 유형,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인증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평가기관을 선정하고 인증신청서 및 제출물을 전달하여야 한다.

제6조(인증평가 일부 생략 신청) ① 인증신청인이 인증평가의 일부 생략을 하고자 할 경우 추가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범위, 인증서(인증유지 공문) 등
- 2. 보안인증을 받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와 동일한 사양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다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환경으로 구축하려는 경우 : 인증서(인증유지 공문) 등
-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정보보호 조치를 취한 경우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인정받은 경우: 정보보호 조치 대상, 결과서 등
- ②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인증평가 일부 생략 대상 및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예비점검) 한국인터넷진홍원은 인증신청인의 인증평가 준비상태를 서면검토 또는 현장 방문 하여 확인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인증평가 계약 체결)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인증신청인의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증평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수수료 산정) ① 인증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한다.

- 1. 인증평가계획 송부, 예비점검, 인증평가, 이행점검에 소요되는 비용
- 2. 교통비, 숙박비, 일비, 식비 등 인증평가 업무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비용
- ②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인증신청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수수료를 감면 또는 조정할 수 있다.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2. 고시 제11조에 따라 인증평가 일부 생략 신청을 하는 경우
- 3. 그 밖에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이 수수료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인증평가 업무 소요기간을 기반으로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 등이 포함된 수수료를 산정하고 이에 대한 내역서를 작성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수수료 납부) 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수수료 산정내역서를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인증

신청인에게 수수료를 청구하여야 한다.

- ② 인증신청인은 인증평가 착수 전까지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③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인증신청인이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안인증 신청을 취소 할 수 있다.

제3장 인증평가 업무 수행

제11조(인증평가팀 구성) 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시행령 제15조의6제3항에 따라 평가기관의 지위로 서 인증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내부 직원은 고시 제16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 ②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인증평가팀 구성 시 다음 각 호 해당하는 평가인력을 제외하여야 한다.
- 1. 인증신청인에 소속(근무)되어 있거나 과거 3년 동안 소속된 경력이 있는 자
- 2. 인증신청인의 보안컨설팅, 위탁업무 등 관련 업무를 과거 3년 동안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 3. 그 밖에 인증신청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
-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직원은 인증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인증평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증평가를 수행한다.
- 2. 성실한 직무수행 및 품위유지를 한다.
- 3. 인증평가와 관련된 부당한 금전,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한다.
- 4. 인증평가의 수행에서 취득한 정보를 관련 법령 또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인증평가 수행 부적합 조건에 해당 시 인증평가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
- 6. 인증평가의 수행과 관련하여 상업적, 재정적 그리고 기타 모든 압력으로부터 배제되어야 한다.
- 7. 제22조에 따른 인증위원회 구성으로부터 배제되어야 한다.

제12조(인증평가팀의 역할) ① 평가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 1. 인증평가 계획 수립, 평가 총괄 및 결과보고
- 2. 보안인증평가원 업무 분장
- 3. 부적합 사항 및 취약점에 대한 보완조치 확인
- 4. 인증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 5. 인증위원회 개최 시 인증평가 결과 보고
- ② 평가팀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 1. 인증평가 수행
- 2. 부적합보고서, 취약점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 3. 평가팀장 지원 및 협력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평가팀은 인증평가 참여 시 별지 제15호 서식의 업무 수행 행동 강령과 별지 제16호 서식의 보안서약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 제13조(평가인력의 자문비 및 출장비)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평가인력에 대하여 별표 제1호의 평가인력 자문비 및 출장비 지급 기준에 따라 자문비 및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서면평가)** 인증평가팀은 서면평가 시 인증신청인이 제출한 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보안인증 기준 적합 여부를 평가하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5조(현장평가) 인증평가팀은 현장평가 시 서면평가의 결과와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호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담당자 인터뷰, 관련 시스템 확인 등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 제16조(취약점 점검 및 침투테스트) 인증평가팀은 취약점 점검 및 침투테스트 시 보안인증 기준 중 취약점 점검 및 침투테스트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 점검도구(툴), 수동점검, 모의해킹 등을 통해 평가한다.
- 제17조(부적합보고서 및 취약점 결과보고서 작성) ① 인증평가팀은 서면/현장평가를 통하여 발견된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부적합 보고서를 작성한다.
- ② 인증평가팀은 취약점 점검 및 침투테스트를 통하여 발견한 취약점에 대하여 취약점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 제18조(보완조치) 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부적합보고서 및 취약점 결과보고서를 인증신청인에게 전달하고, 부적합 사항 및 취약점에 대해 인증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완조치 요청서를 통해 보완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인증신청인은 보완조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완조치를 수행하고 별지 제3호의 보완조치 내역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4조의 보완조치 완료확인서와 함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하다.
- ③ 인증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보완조치가 완료가 어려운 경우 보완조치 미완료 사유, 보완조치 완료예정일을 포함하여 보완조치 연장 공문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팀장은 보완조치 연장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추가 60일의 보완조치 기간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인증신청인은 60일 이내에 보완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 ④ 한국인터넷진홍원은 인증신청인이 제출한 결과에 대하여 이행점검을 통해 조치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⑤ 인증신청인이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보완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보완조치확약서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⑥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5항에 따른 보완조치확약서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보완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인증신청인이 보완조치확약서에 따른 조치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28조제2호에 따라 인증취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 제19조(인증평가 중단) 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증평가를 중단할 수 있다.
 - 1. 인증신청인이 고의로 인증평가를 지연 또는 방해하는 등 인증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평가를 계속 진행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제18조에 따른 보완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의 발생 또는 파산·청산 등의 경영환경 변화로 인하여 평가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인증신청, 서면 및 현장평가, 취약점 점검 및 침투테스트, 보완조치 등 일련의 평가과정 중에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중대한 정보보호 침해사고 또는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 ②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인증평가를 중단한 경우 그 사유를 인증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20조(평가 결과 보고) 평가팀장은 서면/현장평가, 취약점 점검 및 침투테스트를 통하여 발견한 보안인증기준에 부적합한 사항 및 취약점에 대한 보완조치의 내역을 확인하고 30일 이내에 인증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한국인터넷진홍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1조(인증평가 제출물 및 결과물 관리) 한국인터넷진홍원은 인증평가를 통해 받은 제출물 및 생성된 결과물은 비밀로 취급되어 인증평가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외부에 유출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원의 요구가 있거나 법률로 정한 경우 예외로 한다.

제3장 인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2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학계, 연구기관, 기술자문기관 등 정보보호 및 클라우드 관련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한국인터넷진홍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 위촉 시 별지 제6호 서식의 인증위원회 위촉장을 수여한다.
- ④ 위원회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둔다. 단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사전에 지명한 위원 또는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⑥ 위원회의 간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 담당 직원으로 한다.
- ⑦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이유로 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나 위원이 부족할 시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1. 위원회 활동과정에서 금품수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청탁,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위원이 그사실이 확인되어 해촉된 경우
- 2. 위원의 퇴직, 이직, 해임, 보직 및 업무 변경 등의 사유로 해촉된 경우
- 3. 기타 인증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 시

제23조(위원의 윤리 의무)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윤리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1. 위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인증 여부를 심의한다.
- 2. 위원은 성실한 직무수행 및 품위를 유지한다.
- 3. 위원은 인증 심의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전, 금품 등의 수수를 할 수 없다.
- 4. 위원은 인증 심의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 5. 위원은 인증 심의와 관련하여 상업적, 재정적 그리고 기타 모든 압력을 배제하여야 한다.
- 6. 위원은 상기 사항 준수에 대해 별지 제7호 서식의 인증위원회 윤리 서약서 및 별지 제8호 서식의 인증위원 정보보호 서약서를 작성하여 한국인터넷진홍원에 제출한다.

제2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번 연임할 수 있다.

-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기간으로 한다.
- ③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지명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25조(위원회 개최) ① 위원회는 인증평가팀의 심의·의결 요구 또는 위원회 개최 요구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② 긴급한 사유 등으로 인해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거나 의결 안건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판단할 경우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26조(제**척·기피·회피**) ① 인증위원회 위원은 인증신청인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인증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②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인증신청인 또는 이의신청 인은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제27조(심의·의결사항)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최초 및 갱신 평가결과 심의·의결
- 2. 인증 취소 상정 건에 대한 심의·의결
- 3. 기타 인증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항

제28조(회의불참 방지) 각 위원은 위원회에 불참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대 리참석은 인정하지 않는다.

- 제29조(의결 정족수) 회의는 위원장 1명과 전문분야를 고려한 5명 위원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30조(심의의견서 작성) ① 위원은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하여 별지 제9호 서식의 인증위원회 심의 의견서를 작성한다.
- ② 위원장은 각 위원들이 작성한 인증위원회 심의 의견서에 근거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의 인증위원회 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한다.
- ③ 최종심의 의견에 보완해야 할 사항이 제시된 경우, 이를 인증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이에 대한 보완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인증서 심의를 보류할 수 있다.
- 제31조(수당 지급)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내규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인증위원회의 서면 의결 또는 온라인 심의·의결 시에도 인증위원회 개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간주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인증서 발급 및 관리

- 제32조(인증서 발급) ① 한국인터넷진홍원은 인증위원회로부터 인증평가 결과에 대한 심의결과를 통보 받은 경우 인증신청인에게 해당 심의결과를 통보한다.
 - ②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인증평가 결과에 대한 심의가 통과한 경우,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안 인증서를 인증신청인에 교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인증서비스 목록을 게시하여야 한다.
- 제33조(인중서 재발급) 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인증취득인이 별지 제12 호 서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인증취득인에게 인증서를 재교부할 수 있다.
 - 1. 인증서를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
 - 2. 인증취득인이 기관명을 변경한 경우
 - 3. 인증서비스 명칭을 변경한 경우
 - 4. 인증서의 사용 권리를 양수(승계)한 경우
 - 5. 기타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② 제1항 제4호에 의거 인증서 재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1. 인증서비스 소유권 인수를 증명하는 서류
- 2. 인증서비스의 소유권 인수에 따라 변경사항 발생 내역
- 3. 변경사항 발생에 따른 관리대책
- ③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2항의 점검결과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인증취득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증서 재발급을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인증서 관리)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발급한 인증서의 인증번호, 발급번호, 발급인, 유효기간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35조(인중 취소) 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다음 각 호에 경우 인증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인증을 취소 할 수 있다.

-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안인증을 받은 경우
- 2. 인증취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7조제2항에 따른 정해진 기간 내에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3. 허위사실을 표기·광고하거나, 인증서비스를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 ② 한국인터넷진홍원의 장은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인증서비스 목록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 제36조(이의신청) ① 인증취득인은 인증취소 등에 관한 심의결과를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통보받았을 경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인증위원회 심의 결과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인터넷진홍원에 제출한다.
- ②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증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인증취득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사후관리

- 제37조(보안관리 활동) ① 인증취득인은 지속적인 보안수준 유지를 위해 별지 제13호 서식의 보안 인증 사후관리동의서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안 관리 활동 결과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통보해야 한다.
 - 1. 신규 취약점에 대해서는 취약점을 제거하고 조치 결과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통보
 - 2. 클라우드 시스템의 대규모 변경 및 침해사고 발생 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통보
 - 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보안관리 활동이 필요한 추가된 지원서비스 목록을 한국인터넷진흥원 에 통보
- ②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보안관리 활동 결과에 대하여 인증취득인에게 보완조치 요청을 할 수 있다.
- 제38조(사후평가) ① 인증취득인은 인증서 부여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후평가를 완료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전평가로부터 6개월 이후 시점부터 받을 수 있다.
- ② 인증취득인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특정한 사유로 인해 1 년 이내에 사후평가를 진행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통보해야 한다. 위원회 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기한까지 사후평가를 받지 못한 경우 사후평가 이행 기한 을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사후평가 이후 인증유지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 는 인증이 유지되는 것으로 인정한다.
- ③ 인증취득인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중대한 정보보호 침해사고가 발생하거나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후평가를 할 수 있다.
- ④ 사후평가는 인증평가 절차를 준용하여 실시한다.
-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특정한 사유 발생시 소관부처와 협의를 통해 사후평가를 조정할 수 있다.
- ⑥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사후평가 결과 보완조치가 완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사안이 경미하거나 불가피하게 지연된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조치계획서를 검토하여 인증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보완조치계획서에 명시한 기간 내에 보완조치가이뤄지지 않을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 **제39조(갱신평가)** ① 인증취득인은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에 갱신평가를 신청하고 유효기간 이전까지 갱신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 ② 인증취득인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특정한 사유로 인해 인증의 위원회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기한까지 갱신평가를 받지 못한 경우 갱신평가 이행 기한을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갱신평가 이후 인증유지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인증이 유지되는 것으로 인정한다.
- ③ 갱신평가를 신청하는 경우, 인증취득인은 제3조에 따라 인증신청을 하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라 인증평가 계약을 체결하고 평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④ 갱신평가는 최초평가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 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갱신평가 결과 보완조치가 완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사안이 경미하거나 불가피하게 지연된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 인증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증 효력을 부여할 수 있다. 단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보완조치계획서에 명시한 기간 내에 보완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제28조제2호에 따라 인증취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제6장 기타 사항

- 제40조(매뉴얼 제·개정) ① 한국인터넷진홍원의 보안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서는 인증평가 수행을 위해 필요한 매뉴얼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② 각 매뉴얼에 대한 제·개정은 한국인터넷진홍원의 보안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이 승인 한다.
- ③ 각 매뉴얼은 승인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필요시 보안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이 효력 발생일을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2017. 12. 28>

이 지침은 경영기획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3. 11.>

이 지침은 경영기획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4. 30.>

이 지침은 경영기획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하며, 제25조(위원의 임기) 1항의 사항은 소급적용하지 않는다.

부 칙<2022. 1. 27>

이 지침은 경영기획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3. 31.>

이 지침은 경영기획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4. 3.>

이 지침은 경영기획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평가인력 자문비 및 출장비 지급 기준

- 1. 인증평가에 투입되는 평가인력에 대한 자문비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산정한다. ※ 자문비의 최대 지급액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정한 「수수료지급지침」에 따른다.
- 2. 평가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수행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의 자문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 3. 평가원 중 공무원인 경우에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위원회 참석비'를 따른다.
- 4. 국내·외 출장 발생시, 평가원의 교통비, 식비, 숙박비는 한국인터넷진흥원「출장규칙」을 따른다.

[별지 제1호 서식] 부적합보고서

부 적 합 보 고 서									
기록일자		년 월 일		신청기	관				
평가구분	□ 최	초평가	□ \(\sqrt{\text{\tin}\text{\tint{\text{\tetx{\text{\text{\text{\text{\text{\text{\text{\text{\text{\text{\ti}\\\ \text{\text{\text{\text{\text{\text{\text{\text{\text{\text{\text{\text{\text{\text{\text{\texi}\text{\text{\text{\texi}\text{\text{\text{\texi}\text{\text{\texi}\text{\text{\texi}\text{\text{\texi}\text{\texi}\text{\texi}\text{\texi}\text{\texi}\text{\texi}\text{\texi}\text{\texi}\text{\texi}\text{\texi}\t	· 후평가(차)	○ 갱신평가			
서비스 유형	☞ IaaS, Saa	☞ laaS, SaaS 표준, SaaS 간편, 하등급 등							
서비스 명칭									
평가원	성명			홍 길	동	동 (인)			

관련조항	[보안인증기준 통제항목 번호 및 내용 명시] 1. 정보보호정책 및 조직 1.1. 정보보호 정책
문제점	□ (부적합 사항 요약 명시) o [보안인증기준 명시] 보안인증기준 0.0.0()에 따르면 ~하도록 되어있음 - [관련 법률/행정규칙 명시]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00조(000)에는 ~명시하고 있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필요한 경우 표로 작성 제10조(로그온 관리) ② 관리목적 등으로 (중략) 제한하여야 한다. - [관련 신청기관의 정책/지침 내용 명시] 이에 대해 신청기관에서는 ~명시하고 있음 o [운영현황 명시] 이에 따라 신청기관은 ~ 활동을 하고 있음 o [부적합사항 명시] 그러나 ~되고/하고 있지 않음 (신청기관이 이해하기 쉽도록 도표, 그림 등을 포함시킴) o [신청기관 조치 사항 명시] 따라서 ~해야 함 (신청기관 조치사항)
근거목록	

보 완 조 치 요 청 서

	신청기관							
	대 표 자							
평가인증	신청구분	□ 최2	 초평가	\	·후평가(차)	□ 갱신	 평가
신청내역	서비스 유형	☞ IaaS, S	SaaS 표준, S	SaaS Z	<i>ት편, 하등급</i>	<u></u>		
	서비스 명칭							
	적용규격		N스I 바J를 받	보인인증	≶에 관한 고시	[(과학기술정!	보통신부 고시 저	2023-4 <u>호</u>)
평가·인 ※(서면 ※(취약 □ 클라우 등은 !	E치 요청사항 : 현 중 : 부적합 (면/현장평가) 약점 점검) 건 우드 보안인증 평가 별도 첨부 같이 평가·인증에 제출하여 주시기	건), 취 건 가결과보고서 대한 보완	, 건별부적힙	보고사			및 소스코드 (월 일까지 .	
			년	월	일			
	ē	한국인터넷진	민흥원 (평가	팀장 :		(인))		
위 내용 습니다.	용과 별도 보고서	를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벼 기한	내 보완조	치를 완료하	하여 결과를 :	제출하겠
			년	월	일			
		<u>신청기관명</u>	(정보보호	최고책임	임자:	(인))		

- 1. 보완조치완료사항이 미흡한 경우 평가팀장은 재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기관은 재조치 요구사항을 반영한 보완조치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기한 내에 보완조치 완료가 불가한 경우 최대 60일 연장신청(공문을 통한 접수)을 할 수 있습니다.
- 3. 이 평가·인증은 샘플링 심사기법에 의하여 수행된 것으로 발견되지 않은 결합 및 취약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 4. 이 보고서의 내용은 비밀로 취급되며 신청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의 요구가 있거나 법률로 정한 경우 예외로 합니다.

[별지 제3호 서식] 보완조치 내역서

		보	완 조 치	내 역	서				
신청기관									
평가구분		최초평가		사후평가(차)] 갱신평기	ŀ	
서비스 유형	☞ IaaS,	SaaS 표준, Saa	aS 간편, 하등	급 등					
보완구분	\	H면/현장평가		□ 취약점			□ 기타		
서비스명칭									
해당부서									
관련조항	No.통제분	 							
보완내용	※ 부적합 □	보고서 및 취익	·점 결과보고	서 내용 복	사 또는 외	오약 기술 			
보완내역 및 재발방지 대책	첨부, 여러 ※ 분량이	I역을 상세하게 러 페이지 작성 많은 경우 별! 지를 위한 대착	가능 도 첨부 가능		적 자료(실	실행 화면,	문서, 사	진 등	·)를
관련문서 또는 시스템	※ 관련 5	문서 또는 시스틱	템이 있는 경	우 작성					
보완조치 결과제출	작성자		확인자			작성일	년	월	일
보완조치	확인자		결과	□ 완료	□ 미완료	확인일	년	월	일

보 완 조 치 완 료 확 인 서

	신청기관									
	대 표 자									
평가인증	신청구분	□ 최초평가 □ 사후평가(차) □ 갱신평가								
신청내역	서비스 유형	☞ IaaS, SaaS 표준, SaaS 간편, 하등급 등								
	서비스 명칭									
	적용규격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괴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4호)								
□ 보완 내역 : 총 건(부적합 건, 취약점 건)										
□ 보완조	도치 내역 : 총	건(부적합 건, 취약점 건)								
□ 건별 !	보완조치 내역서	별도 첨부								
평가·인	증 부적합 사항	및 취약점에 대한 보완조치를 완료하여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명 (확인자: (인))										
평가·인	평가·인증 부적합 사항 및 취약점에 대해 보완조치 완료 내역을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한국인터넷진흥원 (평가팀장: (인))

- 1. 이 평가·인증은 샘플링 심사기법에 의하여 수행된 것으로 발견되지 않은 결함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 2. 이 보고서의 내용은 비밀로 취급되며 신청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의 요구가 있거나 법률로 정한 경우 예외로 합니다.

[별지 제5호 서식] 보완조치확약서

	보 완	조 치 확 약	서	
신청기관				
평가구분	□ 최초평가	□ 사후평가(차)	□ 갱신평가
서비스 유형	☞ IaaS, SaaS 표준, SaaS 건	가면, 하등급 등		
보완구분	□ 서면/현장평가	□ 취약점		□ 기타
서비스명칭				
해당부서				
관련조항	No.통제분야 No.세부통제			
부적합 사항	※ 부적합보고서 및 취약점 (결과보고서 내용 복	사 또는	요약 기술
조치 계획 및 일정	※ 기간내에 보완조치가 어려 ※ 필요 시 증적 자료(실행 3 ※ 분량이 많은 경우 별도 참 ※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포함	화면, 문서, 사진 등 I부 가능		
관련문서 또는 시스템	※ 관련 문서 또는 시스템이	있는 경우 작성		

위 계획 및 일정에 따른 보완(개발) 조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명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인))

- 1. 보완조치완료사항이 미흡한 경우 평가팀장은 재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2. 재조치 요청에도 불구하고 보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인증 취소 안건을 인증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							
제	호						
		인	증위원회 위	촉장			
	소	속	:				
	성	명	÷				
	기	간	:				
귀하를 니다.	· 한국인터넷진흥원	클라	우드컴퓨팅서비스 !	코안인증	인증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
					년	월	일
			한국인터넷진흥원	l장			

[별지 제7호 서식] 인증위원회 윤리 서약서

인증위원회 윤리 서약서

□ 대상 활	발동 : 클리	구드 ₹	컴퓨팅/	서비스	보안인	증 인증	위원회 횔	동				
□ 위촉 기]간 :	년	월 '	일 ~	년	월	일					
우리는 클 의 실현을					_		위원으로	<u>.</u> 활동함에	있어, 7	개끗하고	투명한	사회
1.	우리는 ⁵ 부패방지! 법령과 구 무를 정 ⁵ 다.	의 바른 구정이	른 길이 정하는	라 생 ² = 절치	각하며, 에 따리	관계 ㅏ 업	터한 등 을 요- 이를 우	부정부패의 금품이나 선구하지도 인기반할 때에 남중히 책임	물, 향응 낳고 받 ^X 는 관계	이나 접다 기도 않겠 법령과 구	대 등 [으며,	
1.		부정한 자신:	방법 과 타인	과 부 ⁱ	대한 수	단에	법적으 의 피하	업무상 지 로 유출.은 배를 주거니 고하는 '정! 다.	폐.왜곡. <u>-</u> 가신과	조작하여 타인의	공공 이익	
1.	우리는 형 정성을 기 니다.			. —	•							
											년 월	릴 일
								인증위원	보회 위원	장 외 위	원 O명 	일동

정보보호 서약서

- 인증위원 임기 : 년 월 일 ~ 년 월 일

본인은 위 기간 동안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 인증위원회 위원으로서 인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을 성실히 준수하고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사실에 대한 비밀을 유출 또는 공개하지 아니할 것이며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소속 :

성명 : (서명)

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비밀 엄수) 이 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사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벌칙) 제32조를 위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나.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 다.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 라.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 마.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누설) 및 제13조(업무상 누설)

제00차 인증위원회 심의 의견서

본인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 인증위원회 위원으로서 평가 결과에 대하여 본인의 의사를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의안	사천기관(사비스)	의 결			
번호	신청기관(서비스)	찬성	반대		
00 <u>호</u>					

심의 의견

년 월 일

인증위원회 위원

(서명)

	인증의	위원회 심의	의	결고	사서				
신청기관									
주소									
평가·인증구분	□ 최초평가	□ 사후평기	' }(차)			갱신	평가	
서비스 유형	☞ IaaS, SaaS 표준	, SaaS 간편, 하	등급	<u></u>					
서비스명칭									
평가기간	본점검		년	월	일 ~	년	월	일	
0/1 12	이행점검		년	월	일 ~	년	월	일	
	이름	서명			이름			서명	
인증위원회 위원									
	□ 적힙	ŀ		□ 부적합					
최종심의 의견									
위와 같이 심의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u>년</u> 월	일
	위원	장					(,	서명 또는	- 인)
						한국인	<u>!</u> 터넷 [;]	진흥원장	귀하

[날

별지 제 1	년지 제11호 서식] 인증위원회 심의 결과 이의 신청서 									
	인증위	원회	심의	결고	나 이의	신청	서			
신	상호 또는 명칭					표자)				
청 기	사업자등록번호				전화	번호				
관	주소(소재지)									
C	기의신청 사유	인증위원회 심의 결과 이의 신청서 상호 또는 명칭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소재지)								
위와 다.	같이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노	보안인증	인증위	원회 심의	결과에 I	대한 이의를	를 신청합니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상호		
재발급	주소		
	대표자 성명		
신청기관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		
	전화/이메일		
	재발급신청사유	사유발생일자	사유별 세부내용
	□ 인증서 분실 또는 훼손		
재발급	□ 인증서보유기관명 변경		
사유	□ 인증 서비스명 변경		
	□ 인증서비스 권리 양도 또는 양수		
	□ 기타		
	인증번호		
	서비스 구분		
인증서비스	서비스명		
	인증서 교부일		
위와 같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 인증시	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년 월	릴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3호 서식] 보안인증 사후관리동의서

보안인증 사후관리동의서

제1조(목적) 본 문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증기관)과 _____(이하 인증취득인)간에 <u>클라우 드 서비스명</u>(IaaS/SaaS 표준등급/SaaS 간편등급/DaaS/하등급 등) 인증 효력 충족 및 유지를 위한 사후관리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후관리사항) 인증취득인은 아래 사후관리사항들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며, 인증기관은 필요시 추가 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 1) 사후평가는 1년 단위로 실시한다.
- 2) 갱신평가는 인증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실시한다.
- 3) 클라우드 시스템의 증설 및 변경사항 발생 시 해당내용을 인증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4) 보완조치확약서가 있을 경우, 조치사항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3조(인증 취소) 인증기관은 인증취득인이 본 문서 제2조 사후관리사항들을 계획대로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인증 취소 안건을 인증위에 상정할 수 있다.

제4조(사후평가 수수료) 인증취득인은 정기(1년 단위)로 실시하는 사후평가에 대해 인증평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수수료 금액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공표한「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의 정보보안 컨설팅 제경비와 기술료 산정 방식에 따른 평가·인증 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른다.

제5조(인증 범위 및 홍보) 본 인증의 대상은 인증취득인의 "〇〇〇〇"(IaaS/SaaS 표준등급/SaaS 간편등급/DaaS/하등급 등)로써 인증취득인은 해당 범위에 한해 홍보가 가능하다. 범위 밖의 서비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받는 것처럼 홍보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인증기관 면책) 보안인증이 클라우드 서비스의 100%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증취 득인은 인증을 취득한 이후에도 안전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할 책임이 있다. 인증취득인의 클라우드 서비스와 관련된 사건, 사고, 침해사고로 부터 인증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0000년 00월 00일

(인증취득인) : *인증 취득기관명* 대표 O O O (인)

주 소 :

(인증기관) :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이 이 (인)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 기업 현황

아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 신청·취득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운영 현황과 개선 사항을 파악하고자 질문으로 구성하였으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명	0000 기업명
서비스 구분	☞ laaS, SaaS 표준, SaaS 간편, 하등급 등
서비스 명칭	000 MHA

1. 귀 사의 클라우드 서비스 공공분야 계약 현황은 어느 정도 입니까?

이용 계약 (건)	공공기관 (수)	
-----------	----------	--

이용 기관명 : 예시) 한국인터넷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용기관 수가 많은 경우 첨부파일 가능)

- 2. 귀 사(기관)는 최근 1년 이내에 정보보호 또는 개인정보보호 인력을 신규 채용하였습니까?
 - 1) 아니오

- 2) 예 (명)
- 3. 귀 사(기관)가 정보보호 관련 인증, 점검,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1년 동안 전체 소요되는 총 인력 및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소요 인력(명) 소요 기간(일)

- 4. 귀 사(기관)가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 구축·운영을 위해 소요된 비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 1) 외부 컨설팅 비용 (※ 해당 범위에 V표시)

해당없음	~ 3천만원 미만	3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2억원 이상
전년도					
당해년도(예상치)					

2) 정보보호서비스 또는 정보보호시스템 구매 비용(H/W, S/W)

전년도	백만원
당해년도(예상치)	백만원

보안인증 인증평가 업무 수행 행동 강령

대상	활동	:	(인증취득인)	(구분)	인증	(최초/사후	-/갱신)	평가

□ 수행 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

우리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 인증평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다음 사항들을 실천하겠습니다.

- I. 우리는 법과 원칙의 철저한 준수야말로 부패방지의 바른 길이라 생각하며, 관계 법령과 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업무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수행 하겠습니다.
- I. 우리는 작은 부패에도 관대하지 않을 것이며, 부정한 방법과 부패한 수단에 의존하여 자신과 타인의 이익을 도모 하지 않겠습니다.
- I. 우리는 혈연·지연·학연보다는 합 리성과 공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하 고 행동하겠습니다.
- I. 우리는 부정부패와 관련될 수 있는 어떠한 금품이나 선물, 향응이나 접대 등을 요구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관계 법령과 규정에 따라 엄중히 책임지겠습니다.

- I. 우리는 업무상 지득한 각종 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은폐·왜곡·조작 하여 공공의 피해를 주거나 자신과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정보부패'를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 I. 우리는 업무 수행과 관련한 불편, 불만, 개선의견 등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본 업무 관련 보직자와의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락자의 인적사항 등은 철저하게 보호하겠습니다.
 - KISA 0000단 단장 000, 00000@kisa.or.kr, 00-000-0000
 - KISA 0000팀 팀장 000, 00000@kisa.or.kr, 00-000-0000

년 월 일

(평가구분) 평가팀장 (평가팀장) 외 (평가원 수)명 일동

 (인)	 (인)
(인)	(인)
(인)	(인)

보안서약서

평가구분	□ 최초평가	□ 사후평가(차)	□ 갱신평가		
서비스 유형	☞ IaaS, SaaS 표준, SaaS 간편, 하등급 등				
신청 기관명					
평가 기간	년 달	월 일 ~ 년	월 일		

본인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수행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을 성실히 준수합니다.

또한, 인증평가 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사실과 신청인의 제출물을 인증업무 수행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출 또는 공개하지 아니할 것이며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형사처벌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소 속 :

성 명:

(서명)

년 월 일

- 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32조(비밀 엄수) 이 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사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다
 - 제35조(벌칙) 제32조를 위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나.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 다.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 라.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 마.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누설) 및 제13조(업무상 누설)